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바이오·로봇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1. 지정 요건 등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

분야	특화분야	학교명	학과(전공)명	지역
바이오	바이오로직스 제조 및 분석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융합연계전공	경기 (수원)
	바이오의약품 개발 (후보물질 발굴)	아주대학교	AI-바이오의약품 융합연계전공	경기 (수원)
로봇	휴머노이드, 모바일 로봇	광운대학교	AI로봇전공	서울
	자율제조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제조로봇·AI 융합전공	경남 (창원)
	모바일로봇	인하대학교	AI로봇 융합전공	인천